

의안번호	2220854
의 퇴 인	박지혜 의원
회 답 일	2026. 9. 16.
추 계 번호	26A4337

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책임경영을 위한 인권·환경 실사법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인권·환경기업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720만원, 2032년 720만원 등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총 3,600만원(연평균 72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- 제정안의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한정하여 추계한 결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: 2028~2032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8	2029	2030	2031	2032	합계	연평균
인권·환경기업위원회 설치 (안 제19조 및 제21조)	7.2	7.2	7.2	7.2	7.2	36.0	7.2

주: 1.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2.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II. 재정수반요인

연 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	○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및 환경침해를 방지하고 피해자가 적절한 구제 절차를 제공·지원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·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해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18조(인권·환경실사의 지원 등)	○ 재정경제부장관은 기업의 인권·환경실사에 관한 지침 및 정보공개 표준을 마련·보급해야 함	의무규정
		○ 재정경제부장관은 인권·환경실사 이행을 위한 컨설팅, 교육·훈련,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		○ 재정경제부장관은 인권·환경실사 지원 등을 함에 있어 중소기업에 대하여 별도의 지원을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의 필요에 맞춘 지원 등을 해야 함	의무규정

연 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3	안 제19조(인권·환경기업 위원회의 설치) 및 제21조 (위원회의 구성 등)	- 기업의 인권·환경실사에 대한 주요 사항의 심의 및 인권·환경실사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인권·환경기업위원회를 둔 -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재정경제부장관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 중 1인은 상임으로 하고, 노동단체·사용자단체·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각 2명을 위원에 포함해야 함	의무규정
4	안 제25조 (사무국)	위원회의 업무처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	의무규정
5	안 제36조(인권·환경침해 피해자지원기금의 설치) 및 제37조(기금의 조성)	- 정부는 인권침해 및 환경침해 피해자의 지원 등을 위하여 인권·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을 설치함 -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함 - 정부의 출연금 -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·물품 및 그 밖의 재산 -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-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	의무규정
6	안 제39조(기금의 관리·운용)	재정경제부장관은 금융기관 예입 및 금전신탁, 재정자금 예탁, 유가증권 매입 등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·운용해야 함	의무규정
7	안 제42조 (과태료)	인권침해 및 환경침해 확인의무, 시정명령 이행의무, 인권·환경실사보고서 공개의무 등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	×	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8조 (인권·환경실사의 지원 등)	×	
3	안 제19조(인권·환경기업위원회의 설치) 및 제21조(위원회의 구성 등)	○	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4	안 제25조(사무국)	×	○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5	안 제36조(인권·환경침해피해자지원 기금의 설치) 및 제37조(기금의 조성)	×	
6	안 제39조(기금의 관리·운용)	×	
7	안 제42조(과태료)	×	○ 미대상(재정수입의 증가)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제정안 중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함에 따라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- 인권·환경기업위원회 설치·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민간위원에 대하여 지급되는 회의비(참석 수당) 등의 비용으로 가정
 -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재정경제부장관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(위원 중 1인은 상임위원)하되, 민간위원은 제정안이 위촉을 의무화하고 있는 노동단체·사용자단체·시민사회단체 추천 위원 6명(각 단체 2명 추천)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정
 - 상임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이 맡는 것으로 가정
 - 회의 개최 횟수는 제정안이 규정한 위원회의 업무수행 범위를 고려하여 분기별 1회씩 연간 4회로 가정
 - 민간위원 1인당 회의 참석 수당은 기획예산처 예산집행지침을 감안하여 회의당 30만원¹⁾으로 가정
 - 위원회의 위원 수는 결원 없이 유지되고, 회의 개최 횟수 및 수당 단가는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-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으로 함

1)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1일당 20만원내(서면심사 15만원), 참석시간 2시간 이상일 경우 1일 1회 한하여 10만원 추가, 사전 자료수집·현지조사·기술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계상된 예산액 범위 내에서 전문가 자문료 또는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 등을 지급할 수 있음(기획예산처, 「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」, 2026. pp. 150~151)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제정안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인권·환경기업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720만원, 2032년 720만원 등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 동안 총 3,600만원(연평균 720만원)으로 추계됨
 - (민간위원) 제정안이 위촉을 의무화하고 있는 노동단체 추천 2명, 사용자단체 추천 2명, 시민사회단체 추천 2명 등 민간위원 6명을 전제로 추계함
 - (횟수) 위원회의 회의 개최 횟수는 제정안이 규정한 위원회의 업무수행 범위를 고려하여 분기별 1회씩 연간 4회로 가정하여 추계함
 - (단가) 민간위원 1인당 지급되는 회의 참석 수당은 기획예산처 예산집행지침을 감안하여 회의당 30만원으로 가정하여 추계함

[표 2] 인권·환경기업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8~2032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8	2029	2030	2031	2032	합계	연평균
인권·환경기업위원회 설치 (민간위원 수×회의 횟수×회의 수당)	7.2	7.2	7.2	7.2	7.2	36.0	7.2

주: 1. 인권·환경기업위원회 설치에 따른 비용 단가는 민간위원 6명, 회의 개최 횟수 연 4회, 회의 참석 수당 30만원 가정
 2.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최천규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천규	02-6788-4653	choi1009@assembly.go.kr